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신용 평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뉴욕 주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발표

주지사, 신용 평가 기관에 미국 최초의 뉴욕주 사이버 보안 규정(Cybersecurity Regulation)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제정할 것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지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뉴욕이 신용 평가 기관 감독

뉴욕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 및 소비자들과 거래할 수 있는 신용 평가 기관의 권한을 거부, 취소 또는 일시 중지시킬 수 있게 된 금융서비스부(DFS) 감독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의 개인 데이터를 노출시킨 에퀴팩스(Equifax)의 배임 사례와 같은 신용 평가 기관의 데이터 유출 위협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 의견 접수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통합한 이 새로운 규정은 뉴욕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 평가 기관들의 경우 금융서비스부(DFS)에 처음 등록한 후,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제정된 뉴욕의 사이버 보안 표준(cybersecurity standard)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용 평가 기관이 불공정, 사기 또는 탈취 행위 등을 비롯하여 특정하게 금지된 관행을 어길 시, 금융서비스부(DFS) 감독관은 연간 보고 의무를 통해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이 뉴욕의 규제를 받는 금융 기관 및 소비자들과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거부, 일시 중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뉴욕은 이 새로운 표준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에 대한 감독은 뉴욕 주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에 관련된 보안 취약성에 대해 안도감을 갖도록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1,000 명 이상의 뉴욕 소비자를 평가 보고한 실적이 있는 모든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은 2018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금융서비스부(DFS)에 반드시 등록하고, 그 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매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금융 서비스, 은행업, 보험법, 규칙 등을 따를 의무가 있는 기관 담당자 및 관리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부(Financial Services)의 Maria T. Vullo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퀴팩스(Equifax)의 데이터 유출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뉴욕의 시장, 소비자, 민감한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제정한 뉴욕의 사이버 보안 규정(cybersecurity regulation)과 같은 강력한 주정부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의 신용 평가 기관들에 대한 감독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뉴욕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여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하도록 만들어서 소비자 금융 정보의 추가 유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 문제 보호 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Affairs and Protection)의 위원장인 Matthew J. Tito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상호 연관성과 소비자 및 우리 금융 기관들이 사이버 공격과 기타 데이터 유출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이 규정은 뉴욕주 전 지역의 소비자들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감독과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DFS) 감독관은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모든 구성원, 대표, 임원 또는 이사 등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의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법, 금융 서비스법 또는 은행법을 위반하거나, (2) 소비자 신용 평가 기관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관 또는 다른 모든 주정부의 보험업 및 은행업 커미셔너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의 모든 규정, 소환장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3) 신용 평가 기관에 주어진 자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이라도 위반한 경우,
-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에 관한 201.07 조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사기성 행위, 강압적 행위 또는 부정직한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또는
- 등록 신청서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정확하고, 실질적으로 호도하며, 실질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마다 금융서비스부(DFS)가 소비자 평가 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연방법에 의해 미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의 운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를 속이거나 호도하려 직간접적으로 계획, 계획, 책략을 이용함;
- 모든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하고 사기성이 있거나 약탈적인 모든 행위 또는 관행에 참여,
- 뉴욕 소비자에 대한 신용 평가 보고서의 집계, 평가 또는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모든 실질적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 도드-프랭크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하여 불공정, 사기, 남용 행위 또는 그러한 관행에 관여한 경우,
- 뉴욕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소비자 평가 보고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된 연방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특정 조항을 통해 소비자가 서명한 서면 승인으로 뉴욕 소비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의 의사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부 기관이 제출한 정보나 보고 또는 감독관이나 기타 정부 기관에서 집행한 수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실을 허위 진술 또는 누락하는 경우.

또한 모든 신용 평가 보고 기관은 최종 규정에 포함된 일정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 금융서비스부의 사이버 보안 규정(cybersecurity regulation)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서비스부(DFS)의 사이버 보안 규정(cybersecurity regulation)으로 금융서비스부(DFS) 규제를 받는 은행, 보험 회사, 기타 금융 서비스 기관은 소비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다음을 포함하는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서면 정책, 이사회 또는 고위 관리자가 승인한 정책, (2) 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3) 뉴욕 금융 서비스 산업의 안전 및 안정을 위한 규제 및 계획 준비. 금융서비스부(DFS)의 사이버 보안 규정(cybersecurity regulation)은 또한 제 3자 공급 업체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연간 인증 준수에 관련된 서류를 금융서비스부(DFS)에 제출할 것도 요구합니다.

최종 규정안의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